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510 호

2019. 3. 13. (수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례]

제700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자치법규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7006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4항과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⑭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, 공무원 재난재해 대응으로 정신적 외상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휴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되,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24조제14항)
- 나. 공무원이 공무원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(안 제24조제15항)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